

2. 都市計画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12號 1995. 3. 14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어업을 위한 관리용 건축물은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66제곱미터이하

제7조 제1항 제1호 차목중 “300제곱미터이하”를 “5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임시가설 건축물은 2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종묘배양장 :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종묘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가구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수산업을 위한 종묘배양장은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1)중 “132제곱미터이하”를 “132제곱미터이하(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목(2)본문중 “200제곱미터이하”를 “200제곱미터이하(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증축 및 설치

(1) 학교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국민학교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 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교된 학교시설의 다른 등급의 학교(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제외한다) 시설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변경설치

(4) 특별시·광역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의 국민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및 중학교의 신축

(5) 행정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고등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군·구로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국·공립 고등학교의 신축(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기존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군단위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과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제7조 제1항 제3호에 주목 및 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의 기존 연구원 부지안에 설치하는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제7조 제1항 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존 정미소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인 창고의 신축·증축 및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칠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정미소의 이축. 이 경우 정미소(창고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증축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로 하며, 이축하는 정미소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제3호 사목 (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중 “이 경우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조합이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이 경우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및 전문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이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은 2천제곱미터이내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기존도축장의 증축(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생산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양생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하는 최소기준면적규모로 한다)

제7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제9조 제3호 본문중 “(측사는 3배이내)”를 “(측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3배이내)”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3조의4·제4조 제1항·제5조·제6조 및 제11조의2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모목·동항 제5호 자목·동항 제6호 차목 및 제11조의4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포목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하고, 동호처목의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바목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호 차목중 “보

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 및 어업활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어업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어구 등의 보관을 위한 66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1호 아목).
- 나. 버섯재배사의 설치허용면적을 300제곱미터이하에서 5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제7조 제1항 제1호차목).
- 다. 농림수산업을 위한 임시가설건축물중 해태건조장은 그 허용면적을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제7조 제1항 제1호 타목).
- 라. 수산물에 대하여 인정하던 종묘배양시설을 농산물에 대하여도 1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1호 파목).
- 마. 건축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

- 시거주자에게 허용되는 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바. 행정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등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공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5호 라목).
- 사.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3호 파목).
- 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3호 주목).
- 자. 한국인삼연구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안에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3호 추목).
- 차. 소음·진동·분진 등의 발생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정미소를 이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4호 라목).
- 카. 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
- 타.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에는 1개에 한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4호 너목).
- 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도축장은 기존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증축후의 면적이 법정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5호 아목).
-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생산시설중 시멘트가공제품생산시설은 법정최소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양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5호 차목).
- 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제품보관용 임시가설천막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항 제6호).

〈건설교통부 제공〉